

□ 자동차검사란??

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.

《검사목적》

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,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.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,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.

《법적근거》

- 자동차관리법 제43조(자동차검사)
-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(자동차종합검사)
-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)
-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)
- 소음 및 진동관리법 제37조(운행차의 정기검사)

《검사종류》

- 정기검사: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- 종합검사: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
- 신규검사: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
- 튜닝검사: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- 임시검사: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- 수리검사:손상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- 이론차검사: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
- 택시미터 사용검정: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

□ 청년인턴 운영 취지

- 청년인턴*은 정부방침에 따라 청년층에게 일자리와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.
* 청년인턴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라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제한
- 고등학교·대학교 졸업생에게 직장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기회를 제공 및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해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직장체험 제도로써 사용기간은 1~10개월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.

□ 근무안내

- (근무지) 전국 59개소 자동차검사소
- (근무기간) 10개월(평일 09:00~18:00, 주 40시간, 주말 선택적 근무 가능)
- (자격요건)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및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
- (보수)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
- (수행직무) 자동차검사 업무 보조
- 배치 소속 : 50명

구분	배치 소속(가나다 순)
각 1명(28개소)	강남, 경주, 고양, 광주, 구로, 구미, 김해, 남원, 달서, 동탄 문경, 부천, 사하, 상암, 서인천, 성남, 수원, 신탄진, 안동, 안산, 안양, 울산, 의정부, 주례, 청주, 춘천, 태백, 포항
각 2명(11개소)	남양주, 노원, 대전, 북광주, 서수원, 성산, 용인, 이현, 인천, 창원, 해운대

※ 채용인원 및 근무지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규직 서류전형 경력 가점 부여

구분	공공기관 청년인턴 (공단 포함, 4개월 이상)	공단 근무경력 (기간제근로자 포함, 상근직에 한함)	
		6개월~1년	1년 이상
가점	3	4	5

□ 채용공고 안내

-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- 공단소개 - 채용정보 - 채용공고 참고
- 채용 지역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공고문 참고(덧붙임)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54-440-3026(검사운영처 장재철)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**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모집하오니
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”**

덧붙임

한국교통안전공단 청년인턴 채용 공고 참고 자료

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

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관내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자격요건 및 채용 인원

모집 분야	인원	자격 요건
청년인턴 (검사보조)	4명	- 연령: 15세 이상 34세 이하 - 자동차정비(검사)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※ 공고일 기준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
장애인 청년인턴 (사무보조)	2명	- 연령: 15세 이상 34세 이하 - 학력·성별에 제한은 없으나,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- 장애인 제한 경쟁 *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 우대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해당자 ※ 공고일 기준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

○ 종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(채용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
* 채용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형벌의 완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정제에 의하여 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채용심사결과 결과 부적합한 자
9. 종단 또는 전 직장에서 제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0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10A. 2. 미성년자에서 다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적된 해임되거나 형 또는 처고장조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처고장조가 확정된 사실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)을 포함한다.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11. 다른 중공기관에서 부정당 발령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혐의자 중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

2. 근무조건

- 신 분 :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
- 보 수 : 종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
- 근무시간 : 주40시간
-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휴차 제공, 4대 보험 가입

3. 모집분야 직무 및 근무지 등

모집 분야	계약기간	채용인원	근무처
청년인턴 (검사보조)	'23.04.10~'24.02.09.	1명	(장남검사소) 서울 강남구 언동로745길 13(솔현동)
	'23.04.10~'24.02.09.	1명	(구르검사소) 서울 구로구 경인로113(오류동)
	'23.04.10~'24.02.09.	1명	(상암검사소)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(상암동)
	'23.04.10~'24.02.09.	1명	(성산검사소)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(성산동)
장애인 청년인턴 (사무보조)	'23.04.10~'24.02.09.	2명	(안전사업1차)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(성산동) (구르CBT검사장) 서울 구로구 경인로113(오류동)

※ 모집 분야별도 계약기간, 근무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지원 요망

※ 검사보조 및 장애인 인턴 일괄 채용 후, 면접심사 성적순으로 선의근무처 배치 예정